

제43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7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
|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 2 |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1.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4 |

(23시45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항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영교 정개특위 관련, 정개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5조제3항 신설로 이후의 항 번호가 조정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57조 및 제62조는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하며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별표1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명칭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개정하고 기존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지역구를 분리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차원에서 이를 합하여 서울특별시 다음에 표기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수정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수정 부분이라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 공직선거법에서 먼저 부칙 3조 1항에 배포해 드린 표와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부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별표2에서 역시 배포해 드린,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수정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동 간 이동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오타자들 이런 것들이 정리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해 드린 이 별표2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표2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속돼 있는 장흥제2선거구에 속한 향양리를 장흥군제1선거구로 이동하고, 장흥군제1선거구에 속한 송암리를 장흥군제2선거구로 이동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부터……

대체토론은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송석준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서영교 송석준 위원님, 뒤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석준 위원 뒤에 가면 주나요?

○위원장 서영교 예, 뒤에 토론 한 번 더 하실 시간이 있으십니다.

○송석준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서영교 이 건은 그냥 넘어가고.

○박지원 위원 토론 한 사람만 하기로 했으니까.

○송석준 위원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

○윤상현 위원 아니, 이따가 해도……

○위원장 서영교 예, 이따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수정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2항 및 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네요.

기관장 허철훈 사무총장님, 김민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23시52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하여 4월 22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석준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집단소송법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리고 또 상법 1·2·3, 이런 기업들을 옴매는 법들이 제대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이렇게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물론 다행스럽게 논의하는 이런 공청회를 갖는 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서 국민적인 우려 또 기업들의 우려가 제기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법안을 그동안 여당 다수로 강행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업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줄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겠지만 그동안 많이 제기된 걱정 중의 하나가 집단소송 도입의 소급 적용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옵트인(Opt-in) 방식이 보통 대륙법계에는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도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

특히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원고적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이 막연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리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할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김재섭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윤상현 이성운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최혁진

○청가 위원(1인)

신동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